

26년도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

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부산 소재 소규모사업장의 회복지원 및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 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‘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’을 추진합니다. 이에 따른 참여 업체를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1

사업개요

- 사업명: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6년 02월부터 12월까지
- 사업목적: 소규모사업장 사업주/노동자의 작업관련성 직업질환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한다.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여 소규모사업장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.

2

지원개요

- 지원대상 (8개 사업장)
 - 부산소재 소규모(고용노동자 10인 이하)사업장, 사업자등록증 필수
 -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로 측정/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
- 지원조건
 - 현장노동자 인터뷰 및 작업안전보건체크리스트 작성
 -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후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지원
- 지원내용
 -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, 업체별 최대 175만원(부가세 포함)
 - (지원금액 외 업체부담 없음, 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) *측정비용 별도지원

○ 개선 지원 범위

-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
- 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·기구, 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등
- 미끄럼·넘어짐 방지, 보호구 구입 등
- ※ 사전면담을 통해 나온 개선과제 10% 이상 반영

3

신청자격 및 주의사항

※ 제출서류

번호	신청 시 제출서류	비 고
1	사업신청서 (총 2장)	신청업체
2	청렴이행각서	
3	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
4	사업자등록증 1부 (사본)	

※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 (평가결과는 신청사업장에 개별통보)
-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.

구분	자격요건
부산소재 사업장	○ 뿌리사업 사업장 우대 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범위를 기준으로 함) ○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소재가 부산인 사업장 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, 부산지역 과세납부 사업장
지원제외 대상기업	○ 임금체불, 근로계약서 미작성, 부당노동행위강요,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○ 그 외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

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사업공고일부터 **3월 12일 목요일 18시 서류접수 마감**
- 접수방법: 부산노동권익센터 방문, 메일, 팩스
 - 방 문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(양정동), 3층
 - 메 일: no_an@bslabors.or.kr / 팩 스: 051-852-1900
- 심사 전 사전 조사 방문: 방문 일정 사업장별 개별 조율
- 결과안내: **3월 20일 금요일**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, 선정 사업장 개별 연락
- 문 의 처: 부산노동권익센터 담당자 성지민 **070-4445-2873(직통)**

추진 단계	주요 내용
모집 공고	• 사업장 모집 및 신청서 접수
↓	
서류 검토	• 신청서 검토 및 평가
↓	
사업장 사전 조사 방문	• 신청 내용 및 사업장 노동형태/환경 사전 확인
선정평가 결과통보	• 선정 후 개별 통보 (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연락)
↓	
사업 진행	•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• 안전보건체크리스트 / 사업장 개선과제 선정 • 개선계획에 따른 지원금 집행 → 결과확인
↓	
사업종료	•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

*서류 접수 후, 사업장 방문 내용

회차	내용	기관
1회	사업장 예비조사	부산노동권익센터 담당자

*사업 선정 시, 사업장 방문 내용

회차	내용	기관
1회차	안전보건체크리스트, 사업장 예비조사	부산노동권익센터, 측정 또는 조사 기관
2회차	측정 또는 조사	
3회차	측정결과 안내 및 설비개선	부산노동권익센터/설비업체